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① 관제대상선박이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는 초단파 무선전화를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관제통신 주파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전파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후 면허와 관련있는 직무에서 승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또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 교육강사별 담당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
4. **교육분야** 및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명세
7.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적발 지원
2.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 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
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의 종류) 법 제18조의 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
2. 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 사고에 관한 사항
4.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관제업무 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1. 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 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확인
2.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3. 3단계(조언):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
4. 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1.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
2. 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
3. 관제시설의 비상운용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3. 조정·정비: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수리·교체하는 작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2.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

어야 한다.

4.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관제통신 주파수(제4조제1항 관련)

연번	채널번호(CH)	통신주파수(MHz)	통신방식
1	06	156.300	단신
2	08	156.400	단신
3	09	156.450	단신
4	10	156.500	단신
5	11	156.550	단신
6	12	156.600	단신
7	13	156.650	단신
8	14	156.700	단신
9	15	156.750	단신
10	16	156.800	단신
11	17	156.850	단신
12	20	(수신)157.000 (송신)161.600	복신
13	22	(수신)157.100 (송신)161.700	복신
14	67	156.375	단신
15	68	156.425	단신
16	69	156.475	단신
17	70	156.525	단신
18	71	156.575	단신
19	72	156.625	단신
20	73	156.675	단신
21	74	156.725	단신
22	75	156.775	단신
23	76	156.825	단신
24	77	156.875	단신
25	87	157.375	단신
26	88	157.425	단신

비고

1. 채널번호 15번 및 17번은 해양방제업무용으로 사용한다.
2. 채널번호 70번은 조난·안전 및 호출을 위한 디지털선택호출용으로 사용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교육·훈련·상담·자문·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

1) 교육강사는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책임교수와 교육과정별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전임교수로 구분한다.

2) 책임교수와 전임교수의 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책임교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를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임교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를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강의실, 브리핑실, 실습실 등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것

나.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장비명	보유기준
음성처리 서버	1대

초단파무선전화/디지털선택호출 송수신장비 (VHF/DSC, 헤드셋 및 스피커를 포함한다)	5대
선박교통관제 운영석	5대
평가시스템 서버	1대
통합감시제어 서버	1대

비고

1. "음성처리 서버"란 교육생 간에 가상으로 음성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기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한다.
2. "초단파무선전화/디지털선택호출 송수신장비(VHF/DSC)"란 교육생 간의 음성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3. "선박교통관제 운영석"이란 선박자동식별장치나 레이더 타겟 등을 이용하여 선박 동정을 감시하고 충돌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평가시스템 서버"란 교육생의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5. "통합감시제어 서버"란 교수가 교육생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라.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마. 그 밖에 전력설비 등 교육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를 갖추고 있을 것

3. 교육과정의 운영 기준

가. 교육계획: 전문교육기관은 교수,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 인원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시간)	교육분야(교육시간)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300)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80), 법적체계(25),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제공(80), 항해지식(60), 관제설비(20), 인적요소(10), 비상상황(25)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60)	언어학(9), 교통관리학(18), 관제설비학(6), 초단파무선통신(6), 인간학(10), 비상관제(11)
선임선박교통 관제사 교육(60)	의사소통 및 리더십(14), 당직관리(8),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제공(16), 비상상황(10), 인적요소(12)
현장직무교육 강사양성교육(30)	선박교통관제관서 교육프로그램 개발(3), 교육생 특별프로그램 준비(3), 현장직무교육의 진행(6), 교육생 평가(10), 교육의 이수(8)

비고

1. **교육분야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과정별 관제업무 실습 시간은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3. <삭 제>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기관명	담당자 전자우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지정 신청 교육과정	☐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 현장직무교육 강사양성교육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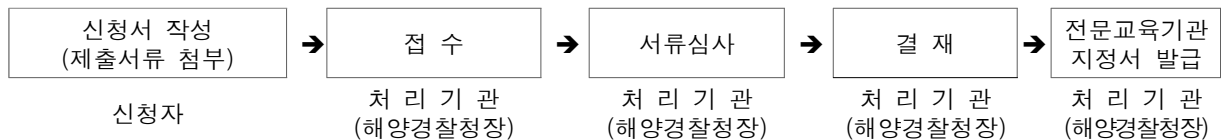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신청자 (대표자)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 교육강사별 담당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 4. 교육분야 및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명세 7.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 서류심사 과정 중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명: (전화번호:)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지정 교육과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직인